

① 바다숲 조성사업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수산자원정책과	과 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	044-200-5530 044-200-5536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바다사막화(갯녹음) 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에 바다숲을 조성·관리하여 연안 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성 회복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

2. 근거법령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, 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3조(탄소흡수원 등의 확충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바다숲 540km² 조성

성과지표	2023 목표치	최근 4개년 실적	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	
바다숲 조성면적(km ²)	25.00	31.30	27.68	23.86	25.36	매년 말	신규조성 면적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합 계	29,962	32,498	33,494	34,040
- 국 비	26,868	28,356	28,958	29,109
- 지방비	3,094	4,142	4,536	4,391

II.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

2.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사업자 자격
 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'공단')
 -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은 지방비 확보계획(추경 확보 등)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(이하 '지자체')

※ 수산자원관리법

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·개발·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한다.

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중략)

1. 인공어초·바다숲·바다목장의 조성 및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
2.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, 대상해역 적지조사, 생태환경조사,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
3.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
4.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(제3조제5호에 따른 「내수면어업법」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)
5.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○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
- 바다숲 사후관리 계획을 미수립하였거나, 사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
-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(인공어초사업, 수산종자방류사업 등)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

- * 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%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% 이상 확보

○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

-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

※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23조(보조금 교부조건)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2.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
3. 지원대상

- 바다사막화(갯녹음)가 진행된 해역별 시급성,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중 지방비 확보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신규 후보지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는 해역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갯녹음으로 훼손된 연안해역의 환경개선 및 해조류 이식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·회복 비용 지원(국비, 지방비)
- 자연해조군락지 보호·보존 및 바다식목일 행사 개최 등의 비용 지원(국비)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조건(재원): 1년차 신규조성(국비 80%, 지방비 20%), 그 외(국비 100%)
- 지원한도(기준): 사업의 명확성, 지방비 투입 여건,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,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 지원
- 사업의무량: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해역은 4년간 바다숲을 조성하고, 사업완료 이후 해당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의무 이행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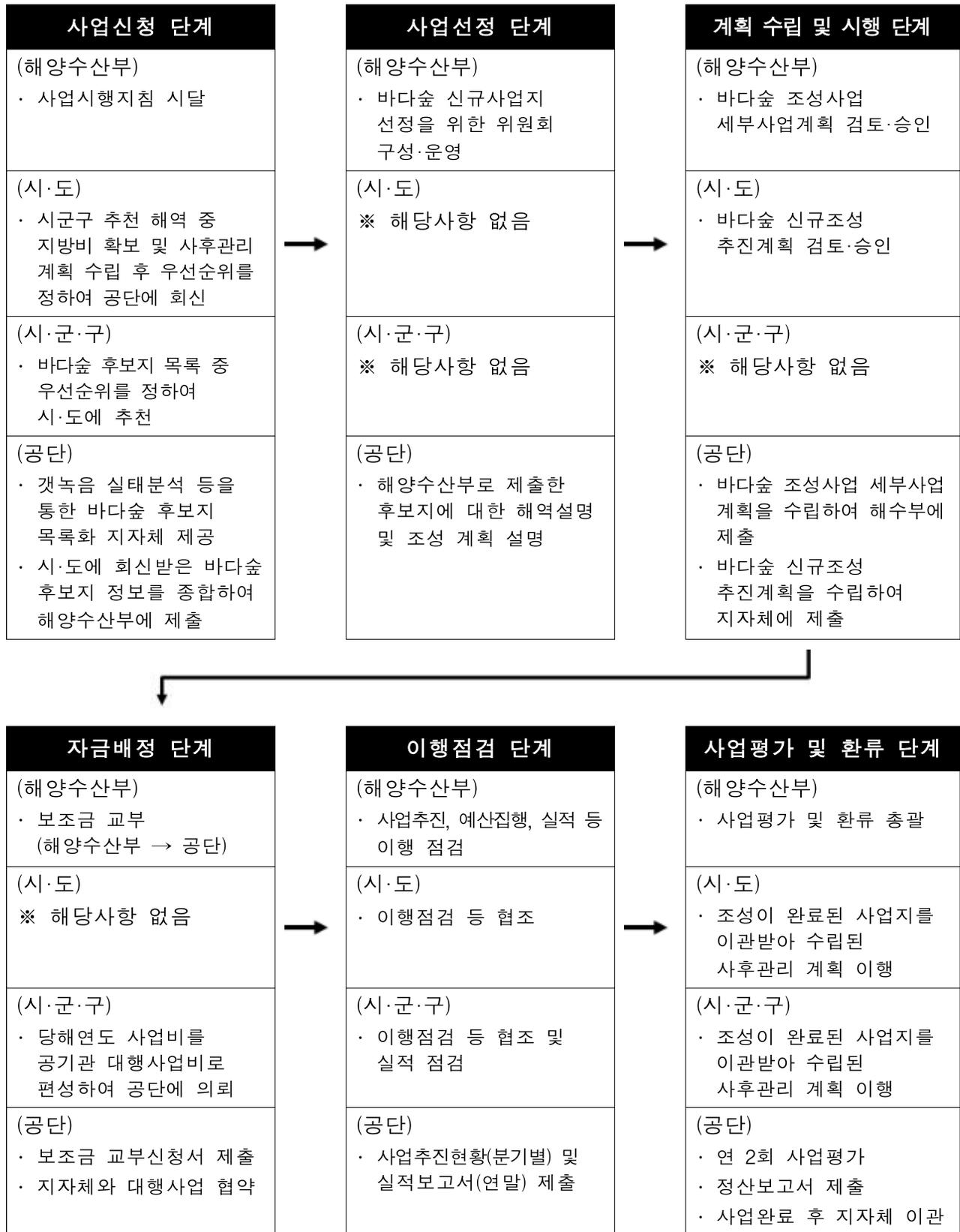
- 지원기준 및 범위
 - 바다숲 신규조성지 1개소당 소요예산 910백만원 기준 국비 80%(728백만원) 지원
 - 바다숲 2-4년차 관리, 천연해조장 보호·보존, 효과조사 및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등 국비 100% 지원

7. 중요재산 관리

-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의 별표7(기타동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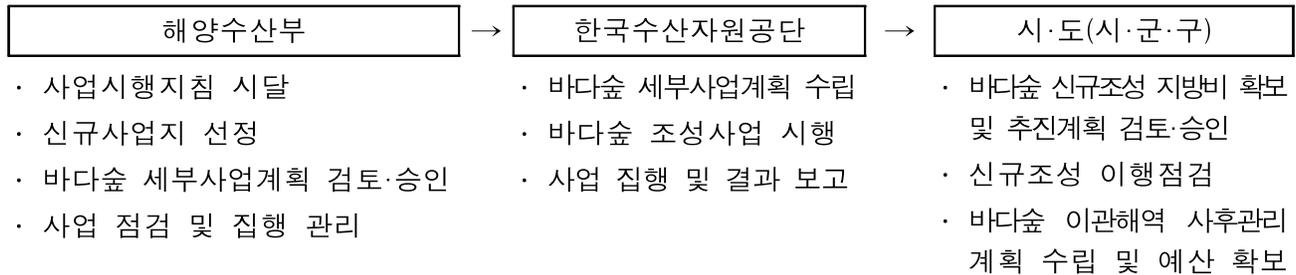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절차의 개요



2. 사업계획수립 단계

- '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: '22년 12월(해양수산부)
- 사업지 선정 모집 공고(해양수산부) : 매년 11~12월
- 사업 추진체계



3. 사업신청 단계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조성사업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지침 시달
-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, 재정여건 및 해역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군·구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에서 사업 신청 해역을 선택하여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신청 목록과 해당 어촌계의 바다숲 조성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·도에 추천
-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에서 신청한 해역 중에 지방비 확보 현황, 사후관리 계획(관리 주기, 주기별 투입예산, 수행내용 등)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단에 회신
 - 구비서류: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서,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협약서 및 사후관리 계획서, 어업인 동의서(서명 포함) 등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갯녹음 실태분석 등을 통한 바다숲 후보지 목록을 지자체에 제공

- 시·도에 회신 받은 신청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

4. 사업자선정 단계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후보지 조사·평가 결과, 각 시·도의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조건을 가진 해역을 사업지로 선정
- 선정 방법
 - 해양수산부, 공단, 학계,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“위원회” 구성하여 선정심사를 통해 신규지 선정
- 선정 우선순위
 - 갯녹음 진행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
 - 바다숲 조성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
 - 바다숲 조성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과 사후관리를 우수하게 이행한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
 - 어촌계 참여 등의 협력이 높아 자율관리가 적극적인 해역
 - 인공구조물의 활용보다 자연암반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
 -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해역
 -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해역
- 선정 제외 및 감점사항
 - 바다숲 사후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지자체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포함한 수산자원증대(산란·서식장 등) 신규사업지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바다숲 사업기간 내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지 않는 지자체는 ‘24년 신규지 선정부터 평가 시 감점 부여

*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해역 포함,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협약서 이행 필수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“위원회”에서 사업후보지 조사·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 설명 및 평가 자문

5.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해양수산부

- 추진시기: 전년도 4분기
-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: 2023년 1월
 - * 바다숲 신규조성예산이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된 첫해로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추경 확보시기와 바다숲 조성시기를 고려하여 국비 우선 집행
- 사업자 선정: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

시·도(시·군·구)

- 바다숲 조성(1차년도) 세부실행계획 변경 시 검토 및 승인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역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
- 사업 시행 중 세부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비는 해양수산부에 변경사항을 승인을 받고, 지방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

6. 자금배정 단계

해양수산부

-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(1년차(신규)사업비 80%, 2~4년차 등 100%)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
- 당해연도 책정된 지방비(1년차(신규)사업비 20%)는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
- 바다숲 조성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,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를 공단의 예산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

시·도(시·군·구)

-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(1년차(신규)사업비 20%)를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및 업무관리 협약 체결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1년차(신규)사업비 80%, 2~4년차 등 100%의 국비(민간자본보조)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
 - 보조금 교부신청, 결정(취소, 변경포함), 확정,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-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,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
 -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,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 제출
- 지자체와 업무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비(1년차(신규)사업비 20%) 배정 요청

7. 이행점검 단계

《총괄》

해양수산부

-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·점검
- 공단이 보고한 사업 종료내용(효과평가 결과 및 지자체 이관협의 결과)을 검토하여, 바다숲 조성 완료해역의 이관 여부를 공단에 승인
-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위기(재난)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 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

《사업 이행》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
 -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,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바다숲 조성사업 적극 지원
-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류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

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

-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지 이관 조치에 따라,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·확산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 실시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공단은 개별 사업해역에 대하여 4년간 조성 실시
 - *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가능(해양수산부와 협의)
- 공단은 바다숲 조성 이후, 사업 종료가 확정된 해역의 이력카드 및 완료 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
 - * 조성완료 후에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·확산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 적극 협조
- 공단은 바다숲 조성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, 관할 지자체, 유관기관 및 어업인과 사업설명회, 업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
- 공단은 바다숲 조성 계획에 따라 해역특성 및 해조류 생활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 수행
 - 바다숲 조성은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조숲, 해초숲 및 산호숲 등을 포함하여 해역특성에 맞게 바다숲을 조성
 - 바다숲 조성 방법은 갯녹음 암반 복원 및 부착 암반 확장(갯담기, 종자부착관 설치, 이·보식, 바다숲 조성용 어초 시설, 자연석 시설 등), 포자 확산단지 조성(수중저 연승, 모조주머니 등), 조식동물 밀도제어, 환경 개선 등으로 해역특성과 대상생물의 재생산 및 확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
 - 갯녹음 발생 등의 자연암반을 활용·개선하는 방법을 바다숲 조성 시 우선 고려
 -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(감태, 곰피, 모자반, 다시마 등) 및 단년생(미역, 쇠미역 등)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
 -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, 자체 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
 -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선정은 어초 효율성, 안정성,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'바다숲 조성사업 인공어초 선정위원회' 심의를 거쳐 선정
 - * 선정은 해양수산부 훈령 「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」에 의거하여 수행, 어초의 제작 설계 및 시설 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
- 바다숲 조성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

- 모니터링 항목: 갯녹음 해소율, 해조류 천이와 생물상 변동, 이식해조류의 성장 및 생존율, 시설어초의 상태와 부착생물상 등 조사
- 조식동물(성게류, 고둥류, 군소류 등)의 서식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
 -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, 해조류 생존율 제고
 - * 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(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너,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사 및 자율관리어선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)
- 이식 해조류의 성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해조(초)류 보식
 - 다른 해조류에 비해 생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에 의해 조성 당시에 비해 생존율이 50% 미만인 경우에 해조(초)류 보식
-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(seed bank) 역할의 목적으로 해조류 양성장을 운영할 수 있음(연구교습양식어장으로 지자체 허가)
 -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
 - * 해조(해초)이식, 씨앗 채취, 관리 등 연구교습양식어장 운영을 위해 어촌계에 위탁 가능
-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성장을 저해하는 폐어구 및 폐기물을 수거·처리하며, 친환경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절감 노력
- 자연재해(태풍 등) 발생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·보수 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

《점검》

해양수산부

- 바다숲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, 시정토록 요구
-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,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 점검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신규조성지에 한하여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,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 점검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공단은 사업추진 실적,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에 보고

《제재》

해양수산부

- 보조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사업비 부정집행 적발 시, 관련 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
- 사업지연 및 성과 미흡한 해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미이행 지역의 바다숲, 수산자원 증대사업 등 신규사업지 선정 시 평가 제외

8.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

《사업평가》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(중간평가, 최종평가)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
 - 평가내용: 사업추진상황, 예산집행상황, 사업추진 성과 및 홍보 등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공단은 연 2회(중간, 최종)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 실시
 - 중간평가(7월)와 최종평가(12월) 실시
 - 평가위원은 7명 이상,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
 - 평가내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,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,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

《환류》

해양수산부

-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해역은 원인분석을 통해 바다숲 관리 강화 등 시정조치
-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
 - 사업신청 단계에서 수립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(예산확보 계획, 예산에 따른 수행계획 등)을 수립
- 조성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, 보수·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 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
IV.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- 「2. 사업신청 단계」와 동일(공고시기 전년도 4분기)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○○○○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

해역	시·도	신청 후보지	면적(k㎡)	비 고
동해	강원			
	경북			
	울산			
	부산			
서해	인천			
	경기			
	충남			
	전북			
남해	전남			
	경남			
제주	제주			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0 0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신청서

《개 요》

- 위 치 :
- 바다숲 해역면적 : 000km²(00,000ha)
- 어촌계명 및 어촌계원 수 :

《해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》

- 어업 현황
 - 어업인수 :
 - 연안어업 :
 - 구획어업 :
 - 마을어업 :
- 어업 특성
 -
 -
 -

《해역 특성》

-
-
-

《해역도》



《관리수면 지정 등 관리이용 계획》

- 자율관리공동체 구성
 -
 -
-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
 -
 -

《기대 효과》

-
-
-
-

※ 사업담당 : 000국 000과 000사무관(전화 :)

확 약 서

제목: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사후관리

000도와 000시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8조에 따라 사후관리 주체로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, 최선을 다하여 바다숲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첨부: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어업인 동의서 및 서명서

년 월 일

000 시도지사 (인)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동 의 서

제목: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

000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 해역에 대하여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수면이용의 제한 등에 동의하며, 바다숲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첨부: 어업인 동의 서명부

년 월 일

000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000 (인)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2023년도 ○○사업
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

2023. .

지방자치단체장 (인)
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(인)

2023년도 ○○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

지방자치단체장(이하 “00시(군)”이라 한다)과 업무관리 대행자인 한국수산 자원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○○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및 ‘23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“공단”에 대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대행사무의 범위)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◇◇◇에 관한 사항
2. △△△에 관한 사항
3. ◇◇◇에 관한 사항
4. △△△에 관한 사항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“00시(군)”와(과) “공단”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계획서 등) “공단”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, 사업내용,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“00시(군)”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 등) ① “사업비”라 함은 조사·설계비, 구조물 설치비, 모니터링 조사비,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
② “00시(군)”은 “공단”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“공단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③ “공단”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

사업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)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“공단”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,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“00시(군)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,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“00시(군)”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“00시(군)”은 “공단”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“00시(군)”은 “공단”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공단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“00시(군)”은 제1항의 보고·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“공단”에 대하여 관계법령·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공단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 자료의 제출 등) ① “공단”은 “00시(군)”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 확인, 관계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공단”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“00시(군)”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“00시(군)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험부담 및 배상책임) ① 사업수행 중 “공단”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“00시(군)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“공단”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“공단”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“공단”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“공단”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“공단”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“공단”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업비 정산) ① “공단”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“00시(군)”에 통보하여야 하며, “00시(군)”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공단”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,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“00시(군)”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“공단”은 사업비 잔액(집행잔액) 반납 시 위탁대행수수료의 정산금은 별도 반납하지 않는다.

제11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“00시(군)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재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
2. “00시(군)”의 예산사정, 기타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
3. 기타 사정으로 “00시(군)”, “공단” 쌍방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
4. “공단”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
5. “공단”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

② “00시(군)”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“공단”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“공단”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2조(비밀유지) “공단”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위탁대행 수수료) “00시(군)”이 “공단”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△%(000백만원)로 한다.

제14조(보고의무) “공단”은 “00시(군)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용어해석 및 분쟁해결)

-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“00시(군)”의 해석에 따른다.
-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관할법원은 “00시(군)”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.

제16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의 효력은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,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장 (인)
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(인)

② 수산자원 증대(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조성사업)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수산자원정책과	과 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	044-200-5530 044-200-5536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수산자원 생산량이 감소한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별 특성과 주요어종 생태를 고려한 어장 및 산란장 등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 구축

2. 근거법령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 (한국수산자원공단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23 목표치	최근 4개년 실적	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19년	20년	21년	22년		
수산자원증대사업 조성(개소)	22	11	11	14	20	매년 말	조성지 개소수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합 계	20,362	22,400	22,400	22,400
- 국 비	10,181	11,200	11,200	11,200
- 지방비	10,181	11,200	11,200	11,200

II.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

2.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사업자 자격
 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'공단')
 -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(이하 '지자체')

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·개발·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한다.

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중략)

1. 인공어초·바다숲·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
2.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, 대상해역 적지조사, 생태환경조사,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
3.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
4.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(제3조제5호에 따른 「내수면어업법」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)
5.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-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 -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
 - 사후관리 계획을 미수립하였거나,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
-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
 -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

3. 지원대상

- 주요 수산자원의 생산량이 감소하여,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장환경 복원 및 수산생물의 산란장 등의 조성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해역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적지조사, 구조물 설치, 모니터링 조사,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
 - 효과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5% 수준으로 편성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조건(재원): 국고 50%, 지방비 50%
- 지원한도(기준): 자원회복 계획의 명확성, 지방비 투입 여건,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 지원
- 사업의무량: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해역은 5년간 증대사업을 추진하고, 조성 완료 이후 해당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의무 이행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지원기준
 - 개소당 국비 500백만원* 지원
 - * 국비 지원은 5억을 한도로 하되, 기본계획 재정투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- 지원범위
 - 인공어초, 자연석, 산란시설물 등 어장 및 산란·서식장 기반 조성
 -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수산종자 등의 방류
 -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폐어구 수거, 해적생물 구제 등 환경개선
 - 조성사업 전·후 사전·사후영향조사 및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등

7. 중요재산 관리

-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2조 제2항 별표 7(기타동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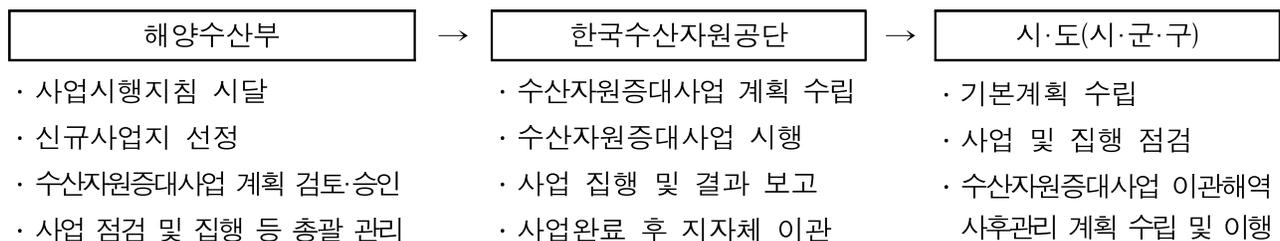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절차의 개요(산란·서식장 조성사업)

사업신청 및 사업선정 단계	사업 시행 및 자금 배정 단계	이행점검 단계	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
(해수부) · 사업시행지침 시달 · 신규사업지 선정 · 수산자원증대사업 세부사업계획 검토·승인	(해수부) · 수산자원증대사업 실시 사업계획 검토·승인 · 보조금 교부 (해양수산부 → 공단)	(해수부) · 사업추진, 예산 집행, 실적 등 이행 점검	(해수부) ·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
(지자체) · 기본계획 수립 · 신규사업 신청	(지자체) · 수산자원증대사업 실시 사업계획 검토·승인 · 당해연도 사업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	(지자체) · 이행점검 협조 및 실적 점검	(지자체) · 조성이 완료된 사업지를 이관받아 수립된 사후관리 계획 이행
(공단) · 수산자원증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수립	(공단) · 수산자원증대사업 실시 사업계획 수립 ·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· 지자체와 대행사업 협약	(공단) · 사업추진상황 (분기별) 및 사업 실적 보고서 (연말) 제출	(공단) · 연 2회 사업평가 · 정산보고서 제출 · 사업완료 후 지자체 이관

2. 사업계획수립 단계

- '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: '22년 12월(해양수산부)
- 사업지 선정 모집 공고(해양수산부) : 매년 11~12월
- 사업 추진체계



3. 사업신청단계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 시달
 - 공고시기: 전년도 4분기
 - 신청절차: 해당 지자체의 장은 조성해역과 대상품종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
- 당해연도 수산자원증대사업 세부사업계획 검토·승인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
 - 구비서류: 사업추진계획서 1부【별지 제2호서식】, 기본계획보고서 1부,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사후관리 협약서 1부【별지 제3호서식】,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어업인 동의서(서명포함) 1부【별지 제4호서식】, 귀어귀촌 가구 수와 경영 이양 직불제 참여 어촌계 증빙서류 등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승인 요청
 -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는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추진절차, 각 담당기관별 수행내용 등을 기재

4. 사업자 선정단계

해양수산부

-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또는 공단의 사업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신규사업지 선정(전년도 4분기)
 - 수산자원 증대사업 조성지로 확정된 지역은 5년간 계속 추진
- 선정방법
 - 해양수산부, 공단, 학계,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“위원회”를 구성하고

기본계획 수립 결과, 후보지 신청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선정

-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사업지, 기본계획변경 검토 및 심의
 - (신규사업지 선정)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 등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 후보지를 상정하여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, 전문가를 포함하는 “위원회”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사·평가를 통해 지원요건에 적합한 신규사업지 선정
 - *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확정
 - (기본계획 변경검토) 급격한 해양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기본계획 필요성, 변경여부 검토 및 승인
- 선정 우선순위
 -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가 우수한 지역(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%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% 이상 확보)
 - 인공어초, 종자방류 등 타 수산자원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이 명확한 지역
 - 전년도 사업신청 해역
 -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업 협조가 적극적인 해역
 - 과거 3년 내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부진, 사업포기로 인한 패널티를 받은 사업지역은 우선순위 고려 제외
 - 수산자원증대 사업기간 내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지 않는 사업지의 해당 지자체는 '24년 신규지 선정부터 평가 시 감점 부여

5.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단계

해양수산부

- 당해연도 수산자원증대사업 실시사업계획 검토·승인
- 수산자원증대사업 실시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,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(국비 50%)를 민간보조로 공단의 예산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
- 당해연도 책정된 지방비(50%)는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

시·도(시·군·구)

-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(지방비 50%)를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및 업무관리 협약 체결【별지 제1호서식】
- 사업적 특성에 따라 필요 시 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사업지에 대한 당해연도 실시사업계획 검토·심의
 - 학계,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/ 실시사업계획 수립·변경 등 심의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50% 또는 100%의 국비(민간자본보조)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
 - 보조금 교부 신청, 결정 및 정산 등의 제반 절차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준용
-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사업계획 승인 및 지방비 배정 요청
 - 실시사업계획에는 어장(기반)조성, 자원조성(방류 등), 환경개선, 효과조사 등 세부사업 추진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 기재
-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 완료 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하며, 사업 완료 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
- 사업목적, 유형, 해역, 연도별 투자계획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 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자체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 실시
 -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와 협의 후 공단 이사장의 검토·승인을 받아 실시

6. 이행점검단계

해양수산부

- 사업추진실적(분기별) 및 사업비 정산(연말)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받아 점검 및 평가
-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, 예산

집행의 적정성, 집행지연,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

-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지자체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
-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
- 수산자원증대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사업개시 전까지 어업인 협의를 거쳐 대상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·이용규정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관리수면으로 지정·고시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,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
-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별 해양수산부, 지자체에 보고
-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보고

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(중간평가, 최종평가)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
-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, 예산집행상황,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, 사업추진 성과, 사업홍보 추진상황,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
 -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·관리자 등

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

-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, 보수·보장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 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연 2회(중간평가, 최종평가)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
 -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
-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»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,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
-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지자체와의 업무관리 대행협약에 의거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정산결과와 사업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자체에 통보

《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- 수산자원 증대사업 효과평가체계 및 사후관리지침 개정 및 시달

시·도(시·군·구)

- 효과평가체계 및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수립 및 이행
- 조성이 완료되어 이관받은 해역에 사후관리 추진 시 공단으로 기술자문 등
- 사후관리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고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(산란·서식장, 시범바다목장 등)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 이전
- 효과평가 및 사후관리 관련 매뉴얼, 프로세스 구축 및 기술지원
- 이관된 사후관리 해역 DB 구축 및 관리

《제재》

해양수산부

- 점검결과 사업 지연 및 부당집행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시정조치
- 지방비 미확보,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, 지자체 사업포기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신규사업 선정 시 패널티 부여
 -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, 신규사업지 선정 제외 등

《기타사항》

-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IV.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2023년도 ○○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

2023. .

지방자치단체장 (인)
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(인)

2023년도 ○○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

지방자치단체장(이하 “00시(군)”이라 한다)과 업무관리 대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○○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및 ‘23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“공단”에 대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대행사무의 범위)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지 조사 및 구조물 시설에 관한 사항
2. 효과 등 모니터링 조사에 관한 사항
3. ◇◇◇에 관한 사항
4. △△△에 관한 사항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에 어려울 경우 사전에 “00시(군)”와(과) “공단”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계획서 등) “공단”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, 사업내용,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“00시(군)”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 등) ① “사업비”라 함은 조사·설계비, 구조물 설치비, 모니터링 조사비,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
② “00시(군)”은 “공단”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“공단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③ “공단”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 사업

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)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“공단”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,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“00시(군)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,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“00시(군)”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“00시(군)”은 “공단”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리위원회 개최) “00시(군)”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. 이 경우 위원수당 등 필요 경비는 “공단”이 부담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“00시(군)”은 “공단”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공단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“00시(군)”은 제1항의 보고·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“공단”에 대하여 관계법령·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공단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 자료의 제출 등) ① “공단”은 “00시(군)”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 확인, 관계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공단”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“00시(군)”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“00시(군)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험부담 및 배상책임) ① 사업수행 중 “공단”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“00시(군)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“공단”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“공단”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

“공단”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“공단”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“공단”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“공단”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업비 정산) ① “공단”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“00시(군)”에 통보하여야 하며, “00시(군)”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공단”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,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“00시(군)”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“공단”은 사업비 잔액(집행잔액) 반납 시 위탁대행수수료의 정산금은 별도 반납하지 않는다.

제12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“00시(군)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재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
2. “00시(군)”의 예산사정,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
3. 기타 사정으로 “00시(군)”, “공단” 쌍방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
4. “공단”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
5. “공단”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

② “00시(군)”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“공단”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“공단”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3조(비밀유지) “공단”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4조(위탁대행 수수료) “00시(군)”이 “공단”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△%(000백만원)로 한다.

제15조(보고의무) “공단”은 “00시(군)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용어해석 및 분쟁해결)

-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“00시(군)”의 해석에 따른다.
-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관할법원은 “00시(군)”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.

제17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의 효력은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,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-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“00시(군)”과 “공단”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장 (인)
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(인)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0 0 0 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사업 추진 계획서

개 요

- 위 치 :
- 조성면적 : 000km²(00,000ha)
- 사업기간 : 0000~0000(5년간)
- 사업비 / 지원조건 : 00억원 / 국비 50% 지방비 50% 이상
- 대상 품종 :
- 사업추진 경위
 - '00~'00 : 예비타당성 조사
 - '00~'00 : 산란·서식장 후보지 선정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연구
 - '00~ : 사업 착수

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

- 어업 현황
 - 어업인수 :
 - 연안어업 :
 - 구획어업 :
 - 마을어업 :
- 어업 특성
 -
 -

사업추진 방향

-
-
-

주요 사업내용

- 산란장
- 서식장
- 종자방류
-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

연차별 투자 계획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재원	총계	0000	0000	0000	0000	0000	비고
합계	합계							
	국비							
	지방비							
산란장	합계							
	국비							
	지방비							
서식장	합계							
	국비							
	지방비							
종자방류	합계							
	국비							
	지방비							
효과조사 및 사후관리	합계							
	국비							
	지방비							

종합 조성계획도

- 해역 현황도(수심, 어장분포, 해양환경 등)



- 종합 조성계획도



향후 추진계획

- 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자율관리공동체 구성
-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

* 사업담당 : 000국 000과 000사무관(전화 :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확 약 서

제목: 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조성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및 사후관리

000도와 000시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8조에 따라 산란·서식장의 사후관리 주체로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, 최선을 다하여 산란·서식장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첨부: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어업인 동의서 및 서명서

년 월 일

000 시도지사 (인)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동 의 서

제목: 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조성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

000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수면이용의 제한 등에 동의하며, 산란·서식장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첨부: 어업인 동의 서명부

년 월 일

000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000 (인)

③ 수산종자 자원관리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수산자원정책과	과 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	044-200-5530 044-200-5536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수산종자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수산자원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

2. 근거법령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2조의2(방류종자의 인증)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23 목표치	최근 4개년 실적	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	
넙치 방류종자의 유전적다양성(%)	69.14	68.50	68.96	69.08	69.11	매년 말	유전적 다양성 (PIC) 분석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합 계	4,167	4,167	4,167	4,167
- 국 비	4,167	4,167	4,167	4,167
- 지방비	-	-	-	-

II.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

2.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사업자 자격
 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
-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 -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

3. 지원대상

- (지원대상) 방류종자인증제(넙치, 확대 대상종),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및 관리 품종(14종), 지자체 어미 유전적 관리(9종 등), 전략품종 조성 및 관리(연어, 전복, 표준화 3종), 방류종자관리시스템, 생명자원센터 등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(지원자금의 사용용도) 방류종자인증제 운영, 유전적 모니터링 및 관리(지자체 어미의 유전적 관리,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,), 전략품종 조성 및 관리(연어류 자원조성 및 가치창출, 고유종 보호보존, 주요 방류품종의 표준 방류기법 마련, 방류정보 플랫폼 운영), 종자관리시설 개선 등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조건(재원) : 국고 100%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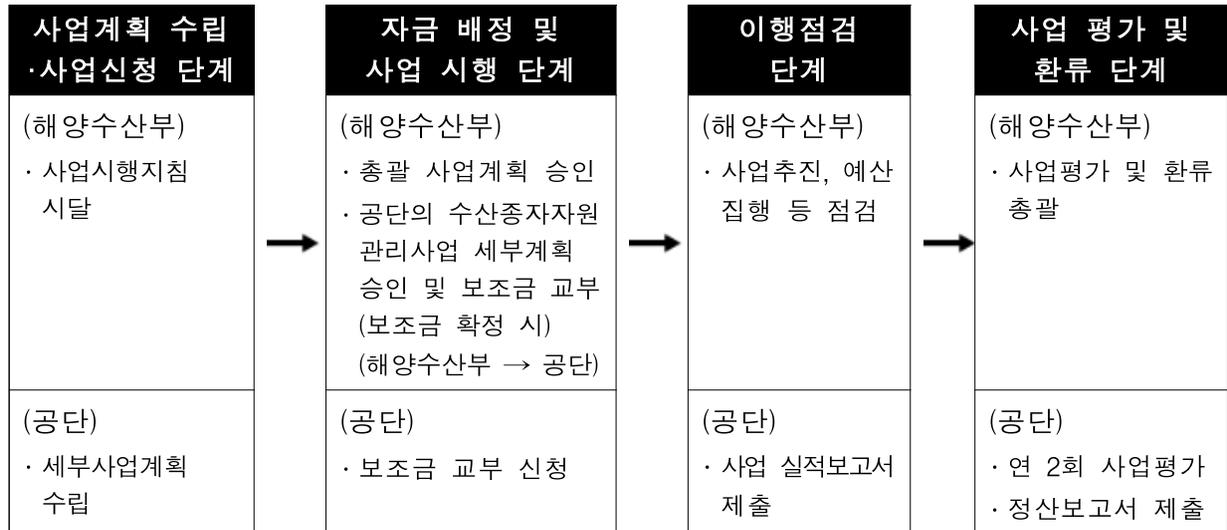
-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: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

7. 중요재산 관리

- 해당없음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절차의 개요



2. 사업계획수립 단계

-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(해양수산부) : 2023. 1월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 예산 통보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

3. 사업신청 단계

해양수산부

- 사업관리주체 : 해양수산부(수산자원정책과)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공단 : 당해연도 수산종자 자원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요청

4. 사업자선정 단계

해양수산부

- 사업자선정 주체 : 사업관리주체

한국수산자원공단

<보조금 신청>

-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
-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, 사업수행계획,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- 보조금 교부신청, 결정(취소, 변경포함), 확정,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»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
5. 자금배정 단계

해양수산부

-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
- 승인하고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(국비 100%)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,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
-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,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 제출

6. 이행점검단계

《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-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
-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(연말)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
-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, 예산 집행의 적정성, 집행지연,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
-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위기(재난)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공단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
-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,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

7.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이 적기에 연 2회(중간·최종평가)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에 참여하거나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
- 점검결과 사업 지연 및 부당집행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시정조치
-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공단은 연 2회(중간, 최종)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

*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

-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을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

《기타사항》

-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IV.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④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수산자원정책과	과 장 임태호 사무관 정은주	044-200-5530 044-200-5542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연어자원 보호 및 자원 증대를 위하여 생태친화적 연어자연산란장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연어 회귀율 확대와 관광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

2. 근거법령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23년 목표치	최근 4개년 실적	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19년	20년	21년	22년		
■ 연어자연산란장 조성	연어자연산란장 준공	기본계획 수립	실시설계	부지매입	실시계획인가	12월말	사업추진 실적 보고서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합 계	11,800	100	-	-
- 국 비	5,900	50	-	-
- 지방비	5,900	50	-	-

*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I.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강원도(양양군)

2.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

-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 연어자연산란장을 설치 및 관리

※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2.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3. 삭제

-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

-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50%를 지방비로 부담

※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23조(보조금 교부조건)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2.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
3. 지원대상

- (지원대상)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의 연어 자연산란장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(지원자금의 사용용도) 생태계 기반의 연어 생태 교육·홍보 및 자원 조성 증대를 위한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의 연어자연산란장 조성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(지원형태) 자치단체자본보조(국비 50%, 지방비 50%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(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)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

7. 중요재산 관리

-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1조 준용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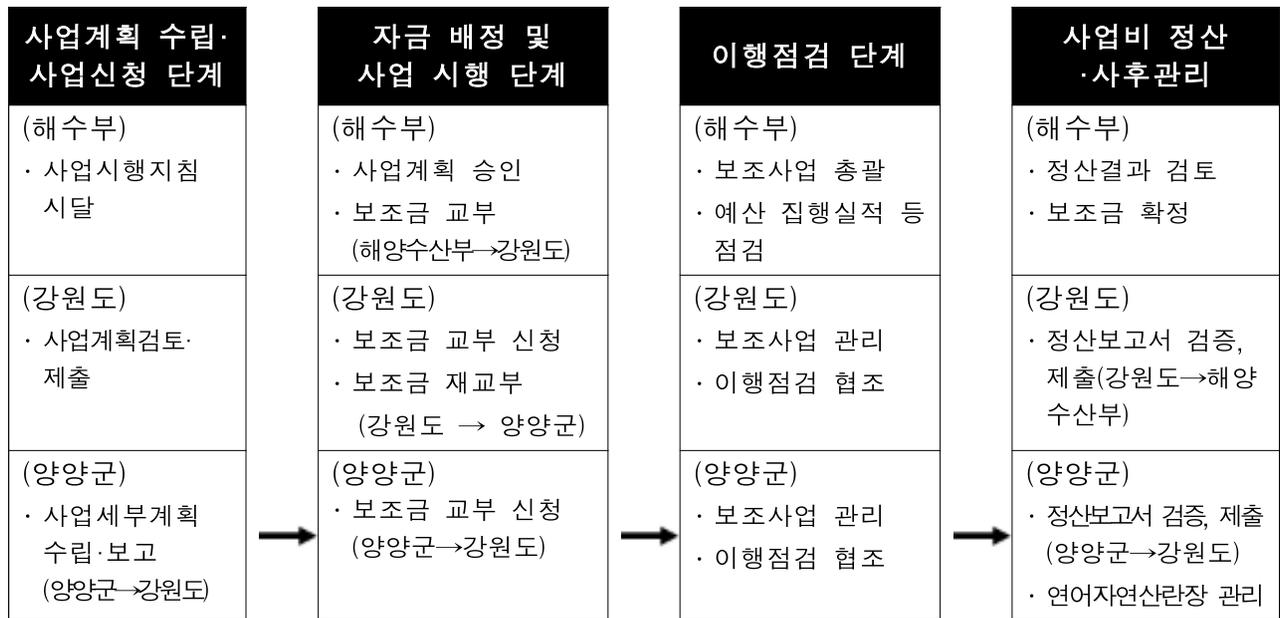
재산명	사후관리기간	처분제한기준
기계·장비	조달청 내용연수+5년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
부동산 (토지, 건물)	10년 이내	

* 단,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 유사 장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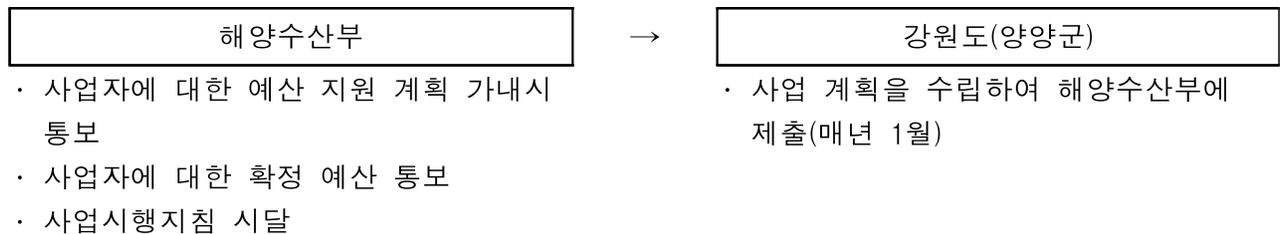
**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·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절차의 개요



2. 사업계획수립 단계



3. 사업신청단계

해양수산부

- 사업관리주체 : 해양수산부(수산자원정책과)
-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

강원도(양양군)

-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, 해양수산부에 제출(매년 1월)

4. 사업자 선정단계

해양수산부

- 사업자선정 주체 : 사업관리주체
- 해양수산부는 강원도(양양군)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
-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(양양군)에 예산안 통보

강원도(양양군)

-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
- *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

5. 자금배정단계

해양수산부

- 강원도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
-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
 - 지급기준 : 2회 이상 분할 교부
 - 정산방법 : 국고보조금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
-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
 - 강원도(양양군)는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해양수산부로 제출
 -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

6. 이행점검단계

《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-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
 -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
 -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
 - 명단 등 공표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
- * 필요시,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

강원도(양양군)

- 최종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·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
- 최종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, 보수·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해양수산부에 보고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 -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1조 준용

《제재》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, 보조금 반환, 강제징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, 부정한 방법으로

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.

《사업추진상황 점검》

해양수산부

- 사업추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, 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 가능
 - 점검항목 :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, 예산조기집행 상황, 사업추진상 문제점,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
 -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

강원도(양양군)

- 강원도(양양군)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및 보고
- 해양수산부의 현장점검 지원

《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- 절차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등 관계규정에 의함

강원도(양양군)

-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

IV.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강원도(양양군)

- 강원도(양양군)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를 국비와 동일한 사업비로 편성 추진
-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이행

⑤ 환동해 블루카본 연구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수산자원정책과	과 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	044-200-5530 044-200-5536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동해안 특성을 반영한 新블루카본(해초·해조·미세조류 등) 발굴 및 확충을 위한 환동해 권역 블루카본 실증연구 추진으로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

2. 근거법령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3조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23년 목표치	최근 4개년 실적	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19년	20년	21년	22년		
환동해 블루카본 연구	기초연구 타당성 확보	-	-	-	-	12월말	사업추진 실적 보고서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합 계	500	-	-	-
- 국 비	500	미정	미정	-

* 23년 기초조사를 통한 연구사업 타당성 확보를 통해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

II.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라 행정관청인 경상북도

2.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
 - 환동해권 블루카본 발굴 및 확충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등

※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2.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3. 삭제

-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

※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23조(보조금 교부조건)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2.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
3. 지원대상

- 환동해 블루카본 발굴 및 확충을 위한 블루카본 연구사업 지원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환동해 특성에 최적화된 탄소흡수원 발굴 및 기초현황조사, 타당성 확보, 실증연구 등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조건(재원) : 국고 100%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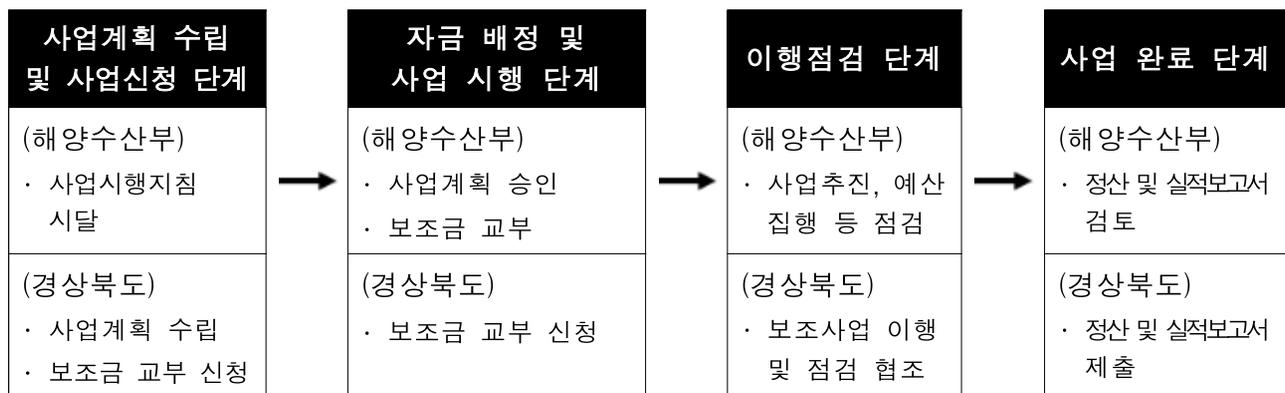
-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: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

7. 중요재산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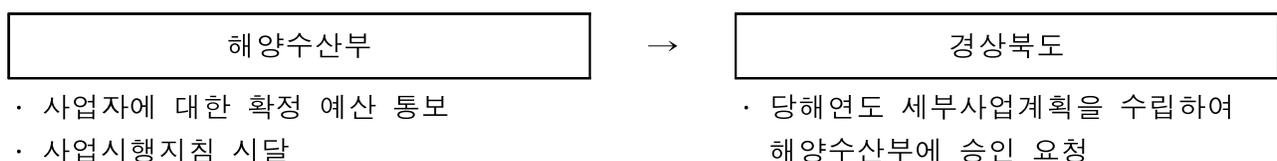
- 해당없음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절차의 개요



2. 사업계획수립 단계



3. 사업신청단계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환동해 블루카본 연구사업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 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지침 시달

경상북도

-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(매년 1월)

4. 사업자 선정단계

해양수산부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라 행정관청인 경상북도에 예산안 통보
-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(매년 1월)

경상북도

-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
-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, 사업수행계획,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- 보조금 교부신청, 결정(취소, 변경포함), 확정,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»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
5. 자금배정단계

해양수산부

- 경상북도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
- 승인하고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(국비 100%)를 공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

경상북도

- 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,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

6. 이행점검단계

《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-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
 -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
 -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
 - 명단 등 공표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
- * 필요시,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

경상북도

- 경상북도는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
-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,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발생 시
 -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1조 준용하여 관리

《제재》

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, 보조금 반환, 강제징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.

《사업추진상황 점검》

해양수산부

- 사업추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, 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 가능
 - 점검항목 :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, 예산조기집행 상황, 사업추진상 문제점,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
 -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

경상북도

- 경상북도는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및 보고
- 해양수산부의 현장점검 지원

《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- 절차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»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등 관계규정에 의함

경상북도

-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

《기타사항》

-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IV.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- 해당사항 없음